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으로 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2014.08.01개정)
-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2014.11.21개정)
-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2015.7.17개정)
- ⑧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호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2015.8.25개정)
-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2017.6.12개정)
- 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2017.12.11.개정)
- ⑪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2021.12.14개정)

-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수급자(2018.8.31.개정)
- 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2019.3.20 개정)
- 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대상자'(2020.11.13 개정)
- ⑮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2023.9.27 개정)
- ⑯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2024.8.14 개정)
- ⑰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2024.9.2 개정)
- 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2024.9.2 개정)
- 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2024.9.2 개정)
- ⑳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2024.9.2 개정)
- ㉑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2024.11.22 개정)
- ㉒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2025.10.02 개정)
- ㉓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대상자(2025.10.02 개정)
- 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2025.10.02 개정)

제4조 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수급금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

이 예금의 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저축예금을 따릅니다.

제7조 비과세종합저축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우대서비스

이 예금 가입자로 제9조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불가]
- ② 신한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제9조 우대조건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대상고객과 우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상고객 : 매월 말일자로 이 예금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② 우대기간 :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 ③ 우대조건(전월 1개월간 실적) : 제4조(입금제한)에서 정한 수급금이 입금된 경우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경과월의 15일까지는 제8조(우대서비스)에서

정한 수수료를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합니다.

제10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 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12.9.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14.8.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3. 이 특약은 2014.11.2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4. 이 특약은 2015.1.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5. 이 특약은 2015.7.1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6. 이 특약은 2015.8.25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7. 이 특약은 2017.6.1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8. 이 특약은 2017.12.1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9. 이 특약은 2018.8.3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0. 이 특약은 2019.4.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1. 이 특약은 2020.11.13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2. 이 특약은 2022.01.24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3. 이 특약은 2023.09.2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4. 이 특약은 2024.08.14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5. 이 특약은 2024.09.0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6. 이 특약은 2024.11.2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7. 0| 특약은 2025.09.0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8. 0| 특약은 2025.10.0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